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조문별 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 개정 이유

상표조사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외부 품질평가전담기관에 의한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필요 사항을 정하고, 사업운영관련 절차를 완화하거나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품질평가전담기관 신설) 품질평가전담기관의 업무범위,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 등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신설 또는 재정립(제2조, 제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 나. (전문기관 인적요건 완화) 상표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분류원 구성요건(등록요건) 및 조사원 등 자격요건 완화(제4조, 제9조)
- 다. (조사원 등 교육범위 확대) 조사원 및 분류원 신규채용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범위에 실무적 내용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제10조)
- 라. (사업물량 산정기준 확대)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산정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사회 기여도를 제고(제22조)

마. (물량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물량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제24조)

바. (품질평가체계 2원화) 품질평가를 조사원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로
2원화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여 기관의 품질노력을 유도
(별표2)

사. (분류·번역 평가기준 정립) 분류·번역 품질을 다면적·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과 기준을 보다 다양하고 명확하게 정립(별표2의2)